

양해각서

김해대학교(이하 "김해대")와 주식회사HEUNG유학상담(이하 "HEUNG학원")라 하며, 김해대와HEUNG를 총칭하여 "양 기관"이라 한다. 양 기관의 사업 영역에 대한 협력과 공동추진을 위하여 업무 제휴에 관한 협약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.

제 1 조 (목적)

본 양해각서는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하여 협력 관계를 확인하고,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역할분담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원칙)

양 기관은 상호 간의 발전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양해각서의 내용을 이행한다.

제 3 조 (역할분담 및 의무)

① 양 기관은 근거 법률 및 사업 영역에 따라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.

김해대학교 협력업무	HEUNG 유학원 협력업무
1. 외국인 유학생 모집 및 출입국 업무 자문기관으로 위촉	1. 외국인 유학생 모집 업무 지원
2. HEUNG 유학원 국제 영역 주식회사 추천인에 대한 입학 및 평생교육원 장학 혜택	2. 김해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 업무 자문
3. 기타 협력 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성실한 지원	3. 국내외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 및 행정 자문
	4. 위임 받은 업무에 대한 성실한 수행

- ② 본 조 제1항은 협력 업무를 확인하는 것으로, 실제 협력 업무의 수행 및 수입료는 양 기관의 개별적 업무에 대한 합의로써 결정하여 진행한다.
- ③ 양 기관은 본 조 제1항에 대하여 업무 불이행에 따른 어떠한 법적인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.

제 4조 (비밀유지)

- ① 양 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 및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으며, 본 협약이 종료된 후에도 또한 같다.
- ② 양 기관은 본 협약의 '당사자'를 포함하여 양해 각서의 내용과 체결 사실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홍보 가능하다.

제 5 조 (유효기간)

- ① 이 양해각서는 양 기관의 합의로써 수정되지 아니하는 한, 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날로부터 2년간 효력이 있으며 자문 법인의 위촉기간 또한 같다.
- ② 만기일 1주 전까지 어느 일방이 협력관계의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 한 본 조 제1항의 기간은 자동적으로 1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.

제 6 조 (일반 사항)

양 기관은 성실하게 합법적이며 직업 윤리에 적합한 사업 운영을 하여, 상호간 기업 이미지를 승화 및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.

[이하 기명 날인을 위한 여백]

양 기관은 이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해각서 2통을 작성하여
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2025년 12월 23일



HEUNG
Education

상 호 : 김해대학교

주 소 : 경남 김해시 삼안로 112번길
198

대표자 : 국제교류원 원장 김성록

(서명)

김성록



회사명: HEUNG STUDY ABROAD CO.LTD

주소: HO CHI MINH CITY, HIEP BINH WARD,
GROUP 3, 4/11 STREET NO.14

담당자: NGUYEN QUOC HUNG

(서명):

